

청주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가단592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2. 3. 23.

판 결 선 고 2022. 4. 27.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6,381,876원 및 그중 25,789,947원에 대하여 2021. 4. 12.부터 2021. 7. 5.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0. 11.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청주지방법원 2020. 12. 15. 접수 제150530호로 마친
소유권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의 성립

- 1) 원고는 2017. 12. 11. 개인사업체인 'C'를 운영하던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부담하게 된 채무 25,5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이행에 관한 신용보증을 하였다.
- 2) 이후 피고 A가 이 사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2020. 12. 1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21. 4. 12. D은행에 대출원리금 채무 25,789,9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3) 이 사건 신용보증 당시 피고 A는 원고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법적절차비용, 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 이후 447,039원의 법적절차비용, 144,890원의 추가보증료가 발생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 이후 연 10%이다.

나. 피고 A의 처분행위 등

- 1) 피고 A는 2020. 11. 30.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 A 지분 전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청주지방법원 2020. 12. 15. 접수 제150530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26,381,876원(= 대위변제금 25,789,947원 + 법적절차비용 447,039원 + 추가보증료 144,89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25,789,94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 4.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7. 5.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21. 4. 12.에 성립하였으나, 위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 11. 30. 당시 이미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의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 A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0. 12. 11.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결국 위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한 것은 자신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조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로서는 이로 인해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채권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F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2020. 11. 30.)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313,775,160원인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F조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43,000,000원, 근저당권자 G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60,000,000원(실제 피담보채무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최고액을 피담보채무액으로 본다)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313,775,160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합계액(303,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자신은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인 이 사건 부동산의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분권자로서 피고 A와는 단지 지분권자로서만 알고 있었을 뿐 특별한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고, 또한 자신의

친구인 G의 소개로 피고 A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A와 G로부터 등기부상의 채무에 대해서만 고지받았을 뿐 그 이외의 원고 등의 채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지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있어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는 그 선의임을 주장하는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가 피고 B의 주장과 같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 경위가 위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B이 당시 피고 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은 피고 A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A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이전에 F조합, G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위 각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말소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전부 취소와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으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2020. 11. 30.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

